2024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정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 합니다.

2024년 3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송 창 구

목 차

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월23일	92명	1. 제63기 결산보고서 승인(안) 2. 조합정관 일부 개정(안) 3. 임원(비상임이사) 선거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1월17일	21명	1.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안) 2. 제주시지점 사무실 임차 재계약 추진(안) 3. 고정자산 취득(안) 4. 2024년 차입금 최고한도 결정(안) 5.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6. 복리후생비(생활안정수당) 지급기준 제정(안) 7. 2024년 직원명예퇴직규정 제정(안) 8.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일 지정(안) 9.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안) 10. 한파피해 재해농가 농자재 지원(안) 11. 조합원 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물품 지원(안) 12. 2024년 모수원, 육묘장, 감귤묘목 생산 계획(안) 13. 2024년 모수원 정비에 따른 생물자산 제각(안) 14. 무보증 신용여신거래 대상 업체 지정(안) 15. 출하선급금 지급 기준 결정(안)
2월5일	21명	1.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안) 2. 간부직원 임용(안) 3. 관항간 예산 조정(안) 4. 조합정관 일부 개정 심의(안) 5. 자기거래 제한 대출 승인(안)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월14일	20명	1.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안) 2. 고정자산 처분(안) 3. 제63기 결산보고서 심의(안)
3월18일	20명	1.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탈퇴조합원 지분환급 승낙(안) 2. 고정자산 취득(안) 3.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안) 4. 조합장직무대행이사, 상임이사직무대행이사, 분과위원장,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안) 5. 산지유통포인트제 도입(안) 6. 정책사업 관련 자금 가지급금 처리(안) 7. 자기거래 제한 대출 승인(안)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본점	63566	서귀포시 신중로 28(강정동)	739-5401	
(하나로마트)	63597	서귀포시 태평로 554(동홍동)	733-5409	
동제주지점	63223	제주시 연삼로 400(이도2동)	755-0500	
제주시지점	63184	제주시 서광로 163(용담1동)	755-0141	
한림한경지점	63029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17(한림리)	796-2476	
중문지점	63544	서귀포시 천제연로 290(대포동)	738-8501	
남원지점	63621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12(남원리)	764-0113	
성산지점	6364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29(고성리)	782-2278	
서귀포시지점	63586	서귀포시 동홍로 186(동홍동)	732-5501	
연동지점	63145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751-0214	
애월지점	63043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203(애월리)	799-1351	
안덕지점	63530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재남로 36(화순리)	794-9108	
노연로지점	63140	제주시 국기로 48(연동)	747-0170	
무역사업소	63234	제주시 연북로 395(도남동)	725-5003	
조천지점	63335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61(조천리)	783-6208	
위미지점	63609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24(위미리)	764-1103	
표선지점	6362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표선리)	787-2967	
서제주지점	63126	제주시 도령로 95, 101(연동, 타워프로빌)	748-5011	
대정지점	6351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40(상모리)	794-6780	
청사로지점	63220	제주시 복지로5길 6, 1층(도남동, 노블빌딩)	725-7870	
동문로지점	63591	서귀포시 동문로 8(서귀동)	763-9871	
동부유통사업소	63616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130번길 170(신흥리)	764-8600	
중부유통사업소	63603	서귀포시 516로 354(토평동)	732-6077	
서부유통사업소	63540	서귀포시 1100로 120(회수동)	739-6781	

나. 인원 현황

구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고
임원	조합장	1	1		
	(비상임)감사	2	2		
	(비상임)이사	16	16		
	상임이사	1	1		
	사외이사	1	1		
	소계(A)	21	21		
직원	M급	6	6		
	3급	19	19		
	4급	29	31	2	
	5급	116	110	△6	
	6급	3	4	1	
	기능직	21	21		
	업무직	2	2		
	기간제근로자	43	42	△1	
	소계(B)	239	235	△4	
총합계(A+B)		260	256	△4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7조(공고방법)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공고방법) ---------- ---------- ---------- ---------- ---------- ---------- ----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	
정관 제18조(출자)	제18조(출자) ① (생 략) ② 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 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좌 이상------ -----. ---------- ----------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③ ---------- ----------. ------ ---------- 10이내 ---------- -.	
정관 제21조(우선출자)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생 략)	제21조(우선출자) ① ------ ---------- ---------- ---------- ---------- ---. ---------- ---------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55조(임원의 임기)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 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생 략) ④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⑥ (생 략)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②·③(생 략) <신 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생 략)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정관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⑤ (생 략)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합----------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정관 제69조(피선거권)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 략)	제69조(피선거권) ① -------- ---------- ----------. 1.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69조(피선거권)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회 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 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ㆍ4. (생 략) ② (생 략)	2. ----------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 ---------- ---------- ---------- ---------- ---------- ---------- ------ 감사위원장------ ----------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 ---------- ---------- ---. ---------- ---------- ---------- ---------- ---------- ---------- ----------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관 제70조(선거공고)	제70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10. (생 략)	제70조(선거공고) ----------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정관 제70조의2(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제70조의2(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70조의2(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75조의 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75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75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1. (현행과 같음) 2. 전자우편----------	
정관 제98조(피선거권)	제98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 략)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 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98조(피선거권) ----------. 1. (현행과 같음) 2. ----------. ------ 조합원인 ----------. 3. (현행과 같음) 4. ---------- 이사의 직을 사직함 ---------- 그 ----------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10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10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 ④ (현행과 같음)	
정관 제106조(자격제한 등)	제106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 략)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6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조합원인 ---------- 3.·4. (현행과 같음) 5. 다른 조합 ---------- 이사의 직을 사직함---------- 그 ----------	
정관 제110조(자격제한 등)	제110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 략)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0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조합 ----------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112조(선거절차)	제112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서 신설>	제112조(선거절차) ① ---------- ---------- ---------- ---------- ---------- 단수 또는 복수----------.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 ---------- ----------.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정관 제117조(자격제한 등)	제117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생략)	제117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조합 ---------- ---------- ---------- ---------- ---------- -------- 5.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13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13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관 제138조의2(운영의 공개)	제138조의2(운영의 공개)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138조의2(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정관 제141조의2(준법점검)	<신 설>	제141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2024년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1/2 간벌발대식 개최
- 1차 : 02/07 중문지점 원대호 농가 과원(서귀포시 대포동)
- 2차 : 02/27 애월지점 양정현 농가 과원(제주시 애월읍)
- 참여자 : 제주감귤농협 임직원 및 지점별 간벌작업단원, 유관기관 등

○ 2024년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1/2간벌사업
- 신청기한 : ~ 4월30일(화) [당초 2월29일(목)에서 연장됨]
- 신청접수 : 제주감귤농협 13개 지사무소
(동제주지점,제주시지점,한림한경지점,애월지점,조천지점,성산지점,서귀포시지점,
남원지점,위미지점,표선지점,중문지점,안덕지점,대정지점)

○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물품(쌀) 지원사업
- 목적 : 급변하는 영농환경(물가상승 등)속에서 조합원의 삶의질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역 : 조합원 1인당 쌀10kg 1포
- 배부장소 : 제주감귤농협 13개 지사무소
(동제주지점,제주시지점,한림한경지점,애월지점,조천지점,성산지점,서귀포시지점,
남원지점,위미지점,표선지점,중문지점,안덕지점,대정지점)

○ 2024년 브랜드감귤대학 제19기 교육과정 운영(中)
- 목적 : 감귤전문지도사 양성을 통한 현장밀착형 지도역량 강화 및 감귤경쟁력 향상
- 신청인원 : 총 54명(조합원 51명 , 직원 3명)
- 교육기간 : 4월 ~ 10월

○ 여성감귤농업인아카데미 제4기 교육과정 운영(中)
- 목적 : 여성농업인 권익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감귤생산 지도체계 구축
- 신청인원 : 총 40명
- 교육기간 : 4월 ~ 10월

○ 제주감귤농협 맞춤형 현장영농교육 실시(中)
- 목적 : 과원 현지에서 감귤농가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교육함으로서
영농정보의 교류 와 소통을 통한 감귤경쟁력 향상 도모
- 교육기간 : 4월 ~ 12월
- 실시사무소 : 중문지점,안덕지점,조천지점,남원지점,위미지점,서귀포시지점.표선지점
한림한경지점,동제주지점,제주시지점

○ 조합원 재해피해 재해지원비 지급 : 34,334,405천원(누계)

○ 조합원 자녀출생축하금 지급 : 200천원(누계)

○ 감귤묘목 공급
- 대묘육모 : 34,124 本
- 일반육묘 : 40,555 本

2. 경제(유통)사업

○ 경제사업은 113,995백만원으로,

계획대비 37.0% 달성, 전년동기 대비 11.3% 성장

- 판매사업 102,20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42.5% 달성, 전년동기 대비 16.2% 성장

- 구매사업 5,92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12.6% 달성, 전년동기 대비 △30.3% 역조

- 마트사업 790백만원으로,

계획대비 15.8% 달성, 전년동기 대비 △14.2% 역조

3. 신용(금융)사업

○ 예수금 평잔 714,425백만원으로,

계획대비 92.6% 달성, 전년동기 대비 △2.8% 역조

○ 상호금융대출금 평잔 653,189백만원으로,

계획대비 91.5% 달성, 전년동기 대비 △2.2% 역조

○ 보험료 2,751백만원으로,

계획대비 14.8% 달성, 전년동기 대비 13.3% 성장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307,722	113,995	37.04	102,381	11,614	11.34
	판 매	240,201	102,202	42.55	87,941	14,261	16.22
	구 매	47,050	5,922	12.59	8,496	△2,574	△30.29
	마 트	5,000	790	15.80	921	△131	△14.22
	가 공	0	0	0.00	1	△1	△100.00
	기 타	15,470	5,081	32.84	5,022	59	1.17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809,000	726,501	89.80	725,320	1,182	0.16
	평잔	771,200	714,425	92.64	735,253	△0,828	△2.83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743,230	650,688	87.55	667,925	△17,237	△2.58
	평잔	714,100	653,189	91.47	667,646	△14,458	△2.17
보험료		18,529	2,751	14.85	2,429	322	13.28

※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 창고, 이용,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유동자산	56,709	Ⅰ.유동부채	56,469
현금	8,381	외상매입금	10,065
외상매출금	6,560	단기차입금	22,517
재고,생물자산	24,415	기타유동부채	23,887
기타유동자산	17,353	Ⅱ.금융업예수금	726,501
Ⅱ.금융업예치금	152,699	Ⅲ.금융업차입금	55,353
Ⅲ.금융업대출채권※	691,047	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부채	72,258
Ⅴ.비유동자산	68,143	장기차입금	66,175
투자자산	20,958	기타비유동부채	6,083
유형자산	44,910	부채 합계	910,581
무형자산	55	Ⅰ.출자금	27,443
기타비유동자산	2,219	Ⅱ.자본잉여금	6,525
		Ⅲ.자본조정	△109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4
		Ⅴ.이익잉여금	24,351
		자본 합계	58,017
자산 총계	968,598	부채와 자본 총계	968,598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3월말 (A)	'24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36,874	35,864	△1,010
영업비용	24,963	25,161	198
매출총이익	11,910	10,702	△1,208
신용사업	4,681	3,695	△985
경제사업	7,230	7,007	△223
판매비와관리비	9,733	9,793	60
영업손익	2,177	909	△1,268
교육지원사업순비	145	157	12
영업외손익	250	253	2
법인세차감전손익	2,283	1,006	△1,278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2,283	1,006	△1,278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